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도시안전과)

의안번호	제198호
제 출 자	이관우 의원 외 11명(2023. 9. 26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의용소방대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의용소방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마. 의용소방대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3. 9. 26. ~ 2023. 10. 1. 의견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 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**의용소방대**에 대하여 「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²⁾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- 법 제16조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7조³⁾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

1)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약칭: 의용소방대법)

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 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(이하 “소방업무”라 한다)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읍 또는 면에 둔다.

2) 제15조(소집수당 등) ① 시·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16조(활동비 지원)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3) 제7조(임무)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
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
-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,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는 현재 7개대 18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성북구 의용소방대 현황(2023. 7. 27. 기준)

구 분	계	혼성대	여성대	전문대	종암지대	돈암지대	길음지대	장위지대
정 원	180	40	40	20	20	20	20	20
현 원	181	39	41	20	21	20	22	18

○ 조문별 주용내용은,

- 안 제1조는 법에 의해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로 규정함.
- 안 제3조는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절차로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제
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출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,

- 안 제6조에서는 목적 외의 용도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교부 받았을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,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는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○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의 화재가 대형화되고, 물적, 인적 피해 또한 점점 커지는 추세에 의용소방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적절하다고 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